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North Korea sanctions compliance

정대진(Jung, Dae Jin)*·조건식(Cho, Kun Shik)**

ABSTRACT

Is North Korea an exception to our economic security target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is a global issue that no country can avoid, and it is also a significant challenge for North Korea. Normally, North Korea has a closed and isolated economic structure, so it can be considered an exception to global economic issues. However, although the trade volume is minimal and the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North Korea also engages in trade and its foreign trade has been on the rise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if the influx of luxury goods prohibited b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ccurs through laundering in overseas markets, no states guarantee that it may free from involving an unintentional violation of sanctions.

When doing business with a country that is conducting trade with North Korea, great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 goods are not ultimately transferred to North Korea. In particular, China accounts for 19.7% of Korea's trade volume and maintains its status as Korea's No. 1 trading partner, and North Korea shows a 96.7% trade dependence on China, so no one can secure the in-case possibility of unintentional transferring South Korea's product to North Korea does not happen. Sincere care must be taken not to become involved in destination issues. In addition, although the amount is small, advance preparation and inspection are required to avoid involvement in unsavory secondary sanctions related to North Korea, which is expanding trade with Vietnam, Argentina, Nigeria, Netherlands, Ethiopia, India, Bangladesh, Spain, and Hong Kong in addition to China. To prevent any emergency from occurring, sanctions compliance education and programs must be strengthened and understanding further improved.

Key words: Global Supply Chain, Northeast Asia Supply Chain, Economic Securit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제1저자: 원주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통일학박사

** 교신저자: 원주 한라대 석좌교수 겸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정치학박사

I. 머리말

북한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인가? 통상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서 예외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역량이 미미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심할 뿐이지, 북한도 무역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에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 중국 시장을 매개로 대북제재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의 상품이 의도치 않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우리 경제안보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광물이나 중간재 등 북한 산업에 필요한 품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고위층의 사치품이 해외시장 세탁¹⁾을 거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나 시장이 연루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면밀한 대비가 없으면 북한 부패와 대북제재에 연루되어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재 위반 페널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²⁾

KOTRA의 『2022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990년부터 조사 이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도에 비해 122.3%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와 북중 간 무역 재개 등으로 인해 수출은 전년 대비 94.0% 증가해서 1.6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26.0%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30.7% 증가했다.

북한의 2022년 최대 수출품목은 광물성생산품(HS 25-27)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3%(6,571만 달러)이며, 전년도 최대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HS 72-83)은 19.3%(3,071만 달러)를 차지했다. 2022년 최대 수입 품목 역시 광물성생산품(HS 25-27)으로 전체 수입의 36.5%(5.2억 달러)이며, 이어서 플라스틱·고무(HS 39-40)가 12.7%(1.8억 달러)를 차지했다.

2022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전년 대비해서 96.7%로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

1) 벤츠는 자사 고급세단의 북한 유입에 대해 그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히며 2024년 초부터 자체조사를 시작한 바 있으며(Voice of America, “Mercedes-Benz Investigates How Its Cars Surface in North Korea Despite Ban”, 5 JAN 2024), 프랑스 고급 핸드백 브랜드인 디올(Dior) 역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부터 자사 제품의 북한 유입 진위 여부에 대한 정보조회를 요청받은 바 있다(Korea Joongang Daily, “Dior can’t confirm authenticity of handbag of Kim Jong-un’s sister”, 21 MAR 2024). 한편 미 고등국방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약 90여개국에 사치품의 대북 유입에 관여된 정황이 있다고 밝혀 사치품 대북 유입 및 부정부패 관련 행위에 그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C4ADS, “LUX & LOADED-Exposing North Korea’s Strategic Procurement Networks” 16 JUL 2019).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산 석탄 불법환적에 개입된 바를 공개한 바 있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UNS/2019/171(12 MAR 2019).

였던 2018년의 95.8%를 갱신하였다. 대중국 수출은 1.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30.0% 증가하였고 수입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24.3% 증가했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교역국가로는 2022년 중국을 선두로 베트남,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다. 또한 나이지리아,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에티오피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홍콩이 북한 10대 교역국을 형성했다. 2022년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페인이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북한의 2022년 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총 5개국이며, 이들의 교역 비중은 2년 연속 98% 수준을 유지해서 금액과 물량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 교역의 아시아 지역 편중 현상도 드러났다.³⁾

20세기부터 본격화한 세계화 시대에 많은 신흥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직접 투자유치와 글로벌 공급망 본격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동유럽, 동남아, 남미의 많은 나라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 왔다.

미중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의 대두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중요한 재편기에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⁴⁾

특히 각종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보통의 국가들과 같이 일반적인 발전전략을 취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하다. 현재 시점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와 같은 정치적 제약이 북한 발전전략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자력갱생과 기술이 국산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국을 위시하여 교역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가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혹은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북한도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 가운데 대북제재 준수(compliance)의 중요성과 대응 방향을 고찰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가 2024년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제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제재 준수는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제재 위반 연루와 패널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KOTRA, 2022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TRA 자료 23-052, 2023.7, 참조.

4) 김계환 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2, 27-29면.

II.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1. 현 시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의미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기업 전략의 범위를 넘어서서 각국의 산업정책은 물론 국가 안보와 외교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세계 경제질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경제정책은 물론 국가안보와 외교, 기업의 전략 등 수많은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 재편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신기술 기반의 산업 전환과 그린 경제로의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효율성 중심에서 리질리언스 중심으로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변화하는 추세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 무역 질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로 들어섰다.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 중대 이정표이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친 20여 년간 글로벌 공급망 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확장기를 거치다가 2010년대에 정체기를 맞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의 구조 전환이 미중 패권경쟁으로 본격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대에 들어 미중 경쟁이 더욱 본격화하고 2020년대 이후에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인 충돌로 글로벌 공급망 확장이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환과 팽창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대에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비추어 본다면 2010년대의 정체와 불안정은 전초전에 불과해 보인다. 2020년대에는 보다 예상하기 힘든 격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2000년대 및 2010년대는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 속도와 무역의 증가 속도에서도 차이가 확연히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속도는 일단 1990년대에 연간 15% 선을 기록하다가 2000년대에 8%로 감소한 후 2010년대 0.8%로 급격히 감소했다. 무역의 증가 속도 또한 1990년대 6%, 2000년대 9%에서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다. GDP가 증가하던 속도의 두 배에 달하던 무역의 증가 속도가 1배 이하로 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⁶⁾

이 시기가 미중 경쟁이 격화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글로벌 공급망은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p. 121.

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p. 123.

요약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대표하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세계적 분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국이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화 시대에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되고 재편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 경제 내 역할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적응에 있어서도 변화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한 힘과 이익 중심의 다극 체제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블록화라는 서로 다른 대외전략 비전 및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최전선이 동북아시아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⁷⁾

특히 탈중국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동북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미중 경쟁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 결과로 세계 질서와 경제에 일종의 블록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블록에 편입될 전망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 가능성은 축소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준수 가능성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

둘째, 미중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디커플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디리스크링(de-risking)과도 일맥상통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에도 이롭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디리스크링은 경제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고, 현실성도 희박해서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대신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생긴 잠재적인 공급망 위험 분야를 식별하고 이 분야에서 대중국 공급망을 선택적으로 탈중국화 내지는 다변화하여 공급망 위험을 감소시키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경쟁이 선택적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크링으로 귀결된다면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전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수준의 공급망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선택적 디커플링이 진행된다면 반도체 등 고사양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이 시도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탈중국화 및 공급망의 다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중 경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탈 중국화 및 공급망 다변화에 기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동북아시아가 핵심 진원지가 될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7) 글로벌 공급망 재편 평가와 의미에 대해서는 김계환 외, 전게서, 73-74면 참조.

2020년에 확산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변화가 생겨났는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하던 상품의 생산 중단 및 축소, 글로벌 물류의 지체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생산과 수송의 비용을 중심으로 따지는 전통적인 공급망 개념뿐만 아니라 희귀 상품이나 자원을 적시에 수급하는 공급망 안전성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아젠다가 되었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더해 경제안보 개념도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 세계 무역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경제안보 문제의 심각성이 역내 국가들에게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전환하거나 다변화할 필요성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적으로는 선별적·부분적 디커플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방향으로 보이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중 경쟁이 양국 사이의 모든 관계 영역으로 확대되어 과거 미·소 냉전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 선별적·부분적 디커플링과 과거 냉전기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전면적 디커플링 사이에서 세계 경제질서가 진동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지속될 것이다. 이 디커플링이 얼마나 빠르고 넓게 확장되거나 또는 유지·조정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정책과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고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형 발전모델을 추진해 온 동북아시아 각국은 새롭게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아시아 역내 분업의 확장과 심화의 과정이기도 하며, 아시아 중심의 독자적 지역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의 전선이 일본에서 아시아 신흥산업국,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남아시아로 확장되고, 이 아시아 지역 내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국가별 산업 발전 전략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가치사슬 접근법과 세계체제 접근법의 통합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기에 새로운 방향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추격론, 추월론의 관점에서 산업고도화라는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에 대한 접근도 주변이나 반주변에 있을 경우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산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하청받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기만 한다는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선도기업, 선도국가가 되어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 공급망 및 가치사슬 전체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기술 최전선 국가 포지셔닝을 하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응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

데에 의도치 않게 교역과정 중 대북 제재에 연루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거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점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강력한 추동 요인이 미중 간 경쟁이기 때문에 생산기지의 탈중국화 또한 불가피하다. 이미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탈중국화는 개시되었다.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범위와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세안으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투자 과정에서도 대북제재 관련 금융 이슈나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기후 위기의 심화와 전지구적인 대응은 미중 경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교역과 국제투자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시계가 점점 가속화함에 따라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선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동 법안에 대응해서 탄소중립산업법⁹⁾과 핵심원자재법¹⁰⁾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한발 더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온실가스 흡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동 법안은 유럽과학자문위원회의 설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2040년 기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각론 성격을 가진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제시하기도 했다.

Fit for 55 내용 중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외 수입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는 구상이다. 탄소 배출량 및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 탄소 가격 차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약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유럽연합(10.8%)이 중국(19.7%),

8) 이석기, “남북한 경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백통일경제연구, 제4호, 2023, 182-184면.

9)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도입되었으며,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역내 자립성과 역량 확대를 도모하는데, 2030년까지 유럽연합 수요의 4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전략적 기술로 1) 태양광 및 태양열, 2) 육상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 3) 배터리 및 저장, 4)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5) 전해조 및 연료전지, 6) 바이오가스·메탄, 7) 탄소 포집·저장(CCS), 8) 그리드를 제시. 국회 미래연구원,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연구보고서 23-08, 2023.12., 88-91면.

1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도입되었으며, 청정에너지 구축 및 신기술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유럽연합 내에서의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도모. 유럽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를 추출, 최소 40%를 가공, 최소 1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였으며, 위의 어느 단계에서도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65%를 역외 단일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않도록 규정. 국회 미래연구원,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연구보고서 23-08, 2023.12., 92-96면.

미국(18.3%)에 우리나라 무역상대국 순위 3위를 차지한다는 점¹¹⁾을 고려하면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대비가 시급하다.

대북제재 준수와 관련해서는 기후관련 사안이 오히려 남북경제관계 조정 및 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물·식량·에너지 넥서스(water·food·energy nexus) 개발 등 재생에너지와 청정산업 개발을 통한 북한의 민생 및 인도적 분야 관련 지원은 대북제재 면제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남북관계도 협력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현 시기 경제안보의 의미

현재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¹²⁾

현재 우리 국내법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은 존재하는데, ‘대외무역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경제안보와 관련되는 개념들이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0월 발의되고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경제안보’ 개념을 동법 제2조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통상, 정치, 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국가 전체의 활동을 영위하고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안보가 모든 국가들이 국익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개념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포괄적으로 ‘국익 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라는 정의 외에 다

11)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 상대국별 수출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10> (검색일 2024.3.10.)

12)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의 맥락에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354면; 이승주,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3호, 2021, 135-137면.

른 내용을 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경제안보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 혹은 정의가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법적 평가나 상황 정리를 할 때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시기에 국가 간 혼란과 갈등은 계속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¹³⁾

크게 보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경제안보는 이 둘을 동시에 포섭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¹⁴⁾ 이러한 관점은 경제안보를 광의로 바라보는 견해이며 여러 국가들도 대체로 경제안보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며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 또한 일반적이다. 경제안보를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개별 국가들은 그 대응과 실행에 있어서 경제안보를 방어적 차원과 공격적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첫째, 방어적 차원이다.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핵심 국익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및 원료를 적시에 확보하는 작업을 경제안보의 기본으로 보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희귀광물과 같은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삼는다.

둘째, 공격적 차원이다.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적극 동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타격을 가하는 데 경제적 수단만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런 방어적 차원과 공격적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조건도 모두 다르므로 경제안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양상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다.¹⁷⁾ 지난 2023년 5월 개최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안보를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며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일련의 정책 수단과 함께 동시에 팬데믹,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은 국제사회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였다.¹⁸⁾

13) 이재민, ‘경제안보’의 법적 의미와 외연, 국제법학회논총, 제68권 제4호, 2023, 216면.

14) 반길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경제안보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전략연구, 통권 제87호, 2022, 301면; 이효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0, 2018, 1면.

15) 이재민, 상계논문, 206-208면.

16) Vincent Cable, “What if International Economic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1995, pp.305-307.

17) Andrzej Lubbe, “National Economic Security”,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1997, p.61.

18) The White House, “G7 Leaders’ Statement on Economic Resilience and Economic Security”, May 20,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20/g7-leaders-statement-on-economic-resilience-and-economic-security/> (“A series of policy goals, ranging from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to combating economic coercion and preventing advanced technology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현안 전반에 대해 공격적, 방어적 차원을 모두 포함해 다방면으로 각국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에 준하는 것이다. 경제안보를 국익 수호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주요 선진국 시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개념 규정을 따르게 되면 경제안보의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정책 수단이 다양한 만큼 경제적 수단도 다양할 것이고, 그만큼 경제안보의 범위도 넓어지면 경제적 요소가 종합적으로나 핵심적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리다 보면 경제안보 개념이 지경학(geo-economics)의 기본내용과 본질적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경학을 “국가 이해를 증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use of economic instruments to promote and defend national interest)”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경제안보와 매우 유사하다.¹⁹⁾

국가 정책 수단의 일종으로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고 이를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이를 경제안보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이미 그 용어가 포함하는 개념은 오랜 기간 사실상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는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²⁰⁾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이 전개되던 와중에 각 진영을 이끌던 주요 국가들은 안보 이익을 위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개별 국가들도 진영 확대 및 동맹 강화라는 안보 목적을 위해서 같은 진영에 있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마샬 플랜이나 구소련의 동구권 국가 경제 원조 같은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2차 대전 후 냉전 시기부터 이미 주요국은 안보면에서 군사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 측면까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견 경제안보적 접근과 궤를 같이 하는 국가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냉전 시기에 이미 경제안보적 사고가 형성되었으며, 냉전 시기의 경쟁과 갈등이 대상을 달리 해서 지금의 미중 경쟁으로 변화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²¹⁾ 그러나 과거 냉전이 이념에 기초해서 편익을 개의치 않고 비용을 지불하던 경쟁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미중 경쟁과 각자도생, 합종연횡의 국제질서에서는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경제와 안보를 동

leakage. At its most basic level, economic security centers around backup plans for various contingencies, such as pandemics, geopolitical crises, or growing disruption related to the climate emergency”).

19) Edward N. Luttwak,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The National Interest*, No. 20, 1990, pp.17-23; Russell Dean Covey, “Adventures in the Zone of Twilight: Separation of Powers and National Economic Security in the Mexican Bailout”, *The Yale Law Journal*, Vol. 105, No. 5, 1996, p.1

20) Aneela Shahzad, “Goeconomics: The New Geopolitics”, *Policy Perspectives*. Vol. 19, No. 2, 2022, pp.36-37

21) 허재철 외,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30면.

일시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경제안보 논의와 개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편 지금의 국제경제 체제의 기초를 구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도 경제안보적 차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그리고 통상 무역 측면에서는 GATT가 출범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통상과 국제금융 체제의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미 당시에는 경제안보라는 용어나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복기해보면 경제안보 차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다. 한 예로 2016년 중국이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에 대해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적이 있고, 2019년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경제안보 차원의 사안이었다. 또한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이 제한된 것도 중국과 일본의 사안이었지만 역시 경제안보 개념 차원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던 비슷한 범주의 일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경제안보는 반드시 다자주의 체제와도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자주의가 각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동한다고 보거나 또는 각국의 경제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나 IMF를 개별 국가가 경제안보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²²⁾ 이는 다자주의 틀을 통해 개별 국가의 경제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인한다.

정리하자면 경제안보라는 용어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지만 그 기본적 개념과 내용은 역사를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발생했던 각종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안보는 각 시기별 차이가 있을지언정 경제안보에 입각한 시각과 정책적, 국가적 노력은 항상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경제안보를 최근에서야 독자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전례 없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전례 없는 대책이나 대응을 과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넓은 견지에서 보면 적

22) Andrzej Lubbe, supra note 17, p. 72.

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이미 존재하던 개념과 정책, 논의를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합하게 가다듬고 정교하고 동시적으로 병행하며 대응해야 한다. 지금의 복잡한 경제안보적 위기 상황은 복잡해신 시대에 복잡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²³⁾

경제안보 개념은 세계화 이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경의 의미도 변화하던 시기를 지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충돌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 시기 경제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고도 민감하게 각국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자유주의와 다자주의 기반 국제경제 체제도 흔들리고 와중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²⁴⁾

이런 혼란 속에서 경제 문제의 주도권이 곧 안보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안보 문제의 주도권이 다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인 신흥 핵심 기술(emerging core technology)을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주도권과 함께 안보상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경제안보 차원에서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되고 있다.²⁵⁾

현실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현 시기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거의 동일시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안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법적인 차원으로 조명해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존 조약 혹은 협정에 포함된 국가안보의 예외나 관습 국제법상 긴급피난 정당화 사유로 포섭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예외나 정당화 사유로 포섭하기 힘든 상황을 다루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내용과 논의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안보라는 이름 하에 모든 내용을 포섭하고 이를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법이며 수용하기 어렵다. 이를 수용할 경우 즉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분리되는 특별한 별도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런 논리에 터잡아 개별 국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제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새로운 논리로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일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혹여 대응논리를 형성하여 북한이나 관련 위반국이 대항한다면 이는 현 시기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에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존의 국제규범에 포섭되지 않은 거래행위나 대상 예컨대 그 영역과 범위 등이 계속 논의 중인 사이버 영역 등에서 북러 협력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당화하거나 일탈을 면피하는 데 경제안보 개념이 차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23) 이재민, 전계논문, 209-212면.

24) 백우열, 전계논문, 326면.

25) 이효영, 전계서, 4면.

필요할 것이다.

III. 경제안보와 대북제재

1.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현재 경제안보 논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바로 공급망 재편일 것이다. 공급망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raw material)부터 완제품(final product)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재화,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뤄지는 연결망을 의미하거나²⁶⁾ 특정한 상품(goods)을 생산 혹은 서비스(services)를 산출 혹은 디지털 품목(digital products)을 창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각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확보, 조달하는 국제적인 분업 및 협업 체계를 통틀어 가리킨다.²⁷⁾

이 분업 및 협업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간 통상협정의 주된 과제였으며 세계화 시대의 주요 흐름이었다. 이 자유로운 공급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오가며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 시설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그동안 공급망을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근본적 변동이 생기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다른 비경제적 가치나 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상품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는 리그의 경제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중 경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 아이템이 바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들 세 영역의 기술 발전이 경쟁의 우위를 결정짓는다거나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세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 상대국의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발전을 늦추거나 저지할 수 있고 나아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곧 국가안보와

26)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리”, 월간 「통상」, 2022.6.

27) Geoff William, “What is a Global Supply Chain”, Business Class, May 19, 2023, <https://www.americanexpress.com/en-us/business/trends-and-insights/articles/what-is-a-global-supply-chain/>.

직결시켜 이 세 아이템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세 아이템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룰 때에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논리는 이 아이템이나 영역들이 그 자체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항목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요소수 사태도 비록 첨단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품목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활동에 직결된 안보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했던 것이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전개되는 최근 각국의 논의와 주요 논거를 보더라도 경제안보 개념은 국가안보의 틀 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경제안보 개념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제경제법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세계화 시대의 자유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대원칙이었던 차별 대우 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차별 대우 (discriminatory treatment)를 전제로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에서 국내법과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자신들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포함 국가와 미포함 국가를 공식적으로 구별하여 서로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 국가들이 구축하는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의 상품,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법률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차별에 직면한다. 이는 비차별 원칙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현재의 국제경제 규범과 관련 통상 및 투자협정의 예외이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상들이다. 현재의 국제경제 규범 틀에서는 각국의 경제안보 관련 조치들을 법리적으로 수용할 방안이 없다. 국제경제 규범 체계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에서 경제안보 조치들의 근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논의 대상인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은 군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안보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들이며 이들은 군사 장비 개발이나 군사적 역량 강화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첨단반도체는 최첨단 미사일과 레이더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동화 무기 체계 (Automated Weapons System)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활용중이다. 여기에다가 인공지능도 추가되면 그 군사적 역량과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양자 기술은 암호화 및 통신, 스텔스 분야에서 기존 군사 활동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논거로 해서 양자 기술 관련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제 규범에서의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사항과 군사적인 연결점이 존재하는 주장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²⁸⁾

대북제재망과 관련해서 주로 석탄, 석유, 광물, 섬유, 수산물 등의 품목에 관련된 제재를 좁게 해석해서 이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첨단반도체나 양자 기술에 대한 북러 혹은 북중

28) 이재민, 전계논문, 231-234면.

협력이 전개되고 이를 북중러가 미중 경쟁 와중에 국가안보의 핵심 이익 사항으로 주장하며 국가안보 예외 조치로 항변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중대 안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과 첨단기술을 놓고 거래를 해야 할 실익이나 명분이 없지만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안의 전개도 항시 대비해야 한다.

2. 대북제재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국제사회 경제제재는 유엔,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제재 레짐은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²⁹⁾ 대북제재도 유엔, 미국,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각 제재부과 주체들은 각기 다른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중복되기도 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제재 내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유엔의 경우 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결의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북제재를 시행한다. 미국은 다양한 국내법을 활용해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집행하고 있다.³⁰⁾

첫째, 유엔 대북제재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집행하고 있는 다자제재라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대북제재로 존재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들을 다수 통과시켰다.

2006년 UNSCR 제1695호, 제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제2397호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수출통제 대상품목 지정을 비롯해서 경제제재 대상을 계속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나 2016년 이후 취해진 일련의 대북제재들은 북한이 2018년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에 “유엔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 하라”³¹⁾고 요구할 만큼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9) 전략물자관리원,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서울:전략물자관리원. 2018.

30) 문예찬,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유엔과 EU,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4권 3호, 2023, 75-76면.

31) 「[전문] 이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중앙일보』, 2019년 3월1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8984#home> (검색일: 2024.3.10.)

[표 1] 2016년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제재결의 (채택일자)	북한도발 (도발일자)	주요내용
결의2270 (2016.3.2.)	제4차 핵실험 (2016.1.6.)	- 기존 제재조치 강화(금융제재 강화, 전면적 무기 금수,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의무화) - 신규 제재조치 도입(제재 회피·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및 정부 대표 추방, 석탄 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결의2321 (2016.11.30.)	제5차 핵실험 (2016.9.9.)	-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금지 광물 추가(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 신규 헬리콥터, 선박 수출금지 - 의심선박의 기국 취소, 회원국 선박의 북한선원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결의2356 (2017.6.2.)	탄도미사일발사 (2017.5.29.)	- 제재 대상 추가(개인 14명 및 단체 4개)
결의2371 (2017.8.5.)	ICBM 발사 (2017.7.28.)	- 북한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 북한 남 및 남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추진·화대 금지 등
결의2375 (2017.9.11.)	제6차 핵실험 (2017.9.3.)	- 북한 원유수출 연400만 배럴 이하 동결, 정유제품 공급 55% 감축 - 섬유제품 수출 금지(원산지 무관, 유효기간 90일) 및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금지) 등
결의2397 (2017.12.22.)	탄도미사일발사 (2017.11.29.)	- 대북 유류공급 제한 강화(원유공급 연 400만 배럴, 정제유 공급 연50만 배럴로 제한, 대북 원유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의 식료품, 농산물, 기계류, 전기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의 수출금지 및 수산물 수출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포함 등

자료: 고재길, “대북 경제제재 하의 교역물품 반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 22권 제1호, 2021, 33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은 UNSCR 제1718호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 공급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특히 UNSCR 제1718호 제12항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관리할 기구로 1718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매커니즘을 구축했음을 보여주었다. 1718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패널도 또한 설치되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했으나 2024년 4월부터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UNSCR 제2270호를 기점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화한다. 기존의 대북제재가 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 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UNSCR 2270호 이후로는 북한의 수출입, 노동자 파견을 포함해서 북한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제재가 확대되었다.

UNSCR 제2270호는 북한산 석탄 및 철과 철광석, 금, 티타늄광 등의 광물들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사치품 목록이 추가되었다. 분야별 금지 품목들은 UNSCR 제2321, 2371, 2375호를 통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UNSCR 제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 거의 대부분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식품과 농산물을 물론이고 기계류 및 전자기기,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석회 및 목재류, 선박 등 북한의 주요 수출이 전면 통

제되었다.³²⁾

유엔의 대북제재는 국제관계 보편성에 입각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제재의 이행을 협조해 왔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과 우리나라도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하면서 대북제재 매커니즘이 국제적으로도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³³⁾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해서 유엔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제재의 특징은 가장 최근래인 2022년에 들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동년에 대북제재 리스트를 연쇄 추가하며 제재 강도를 더욱 높였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4월 총 8명에 대해 추가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에리트리아의 ‘에리트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와 함께 북한 건설업체 코겐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표 2] 유럽연합의 주요 대북제재

CFSP 공동의교안보정책	제정일	내용
Common Position 2006/795/CFSP	2006. 11.	유엔안보리결의안1718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입장 및 각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
Common Position 2009/573/CFSP	2009.7	Common Position 2006/795/CFSP에 결의안 1874호 내용 반영
Council Decision 2009/599/CFSP	2009.8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I 제재대상자 명단 공표(개인 5명, 단체 8개)
Council Decision 2009/1002/CFSP	2009.12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II 제재대상자(개인 12명, 단체 4개) 및 Annex III 제재대상자(개인 1명)명단 공표
Council Decision 2010/800/CFSP	2010.12	Common Position 2006/795/CFSP 대체 Annex I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5명, 단체 8개) Annex II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2명, 단체 8개) Annex III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2명, 단체 2개) 발표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2013.4	결의안 2094호 내용 반영. Council Decision 2010/800/CFSP 대체. Annex I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2명, 단체 19개) Annex II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7명, 단체 16개) 명단 발표
Council Decision 2016/476	2016.3	결의안 2270호 내용을 반영하여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개정
Council Decision 2016/849	2016.5	결의안 2270호 의무범위를 넘은 다양한 독자제재(사전허가 없는 모든 대 북금융거래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금지, 북한선박 입항 금지 등)를 담아 Decision 2013/183/CFSP 대체

출처: 전략물자관리원(2024)

32) 고재길, “대북 경제제재 하의 교역물품 반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1호, 2021, 33-34면.

33)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 2023, 107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체로 유엔의 제재를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유엔이 제재를 가하기 전이나 혹은 유엔 제재 부과 이후에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새로운 독자 경제제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한다. 특히 미국은 유엔 제재의 강제력이 다소 낮은 점을 보완하고자 미국 국내법을 활용하여 대북제재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6년에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을 통과시켰고 2021년까지 개인과 기관을 포함해 총 490건에 달하는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른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며 유엔 제재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제재는 2차 제재를 도입하여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게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국내 법령에 근거하는데 미국 애국자법, 오토 워비어법, 행정명령 13722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미국 애국자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른 제재 부과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교역과 경제활동이 사실상 차단된다. 오토 워비어법의 경우 미국의 더욱 강력한 2차 제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대상을 북한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으로까지 확대시켰다. 행정명령 13722호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며 제재 대상의 미국 내 모든 재산과 재산권을 동결한다. 2차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과 거래를 진행한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단둥은행(Bank of Dandong), ABLV 은행 등을 들 수 있다.³⁴⁾

또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단순히 유엔 제재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도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주로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라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인권이나 정치체제 문제 등을 다양한 근거로 활용하며 경제제재를 확장해 왔다.³⁵⁾

여러모로 보아도 현재 미국은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이며 그중에서도 대북제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의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북제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외국인을 미국 대북제재 대상자 목록에 등재한 바도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되는 특징이 있어 우리 기업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각종 교역품목 관련 가드레일 조항이 신설되고 미국과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시점에

34) 문예찬, 전계논문, 76면, .

35) 민태은 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통일연구원. 2022.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도치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은 대북제재 관련 연루사항이 발생되어 2차 제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북한과 직접 무역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2차 제재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미국 대북제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국의 대북제재 내용을 우리 기업들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피수단의 핵심은 해상을 통한 각종 금지물품의 수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런 불법 환적은 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나 선박이 부지불식간에 대북제재 위반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어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³⁶⁾

또한 북한과 여전히 교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거래할 시에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19.7%를 차지하며 제1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 대해 96.7%에 달하는 무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어 중국 시장을 매개로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품목 최종 도착지 문제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액수는 미미하지만 북한과 10대 교역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홍콩 등과의 교역 중 북한과 관계되어 불미스러운 2차 제재 연루 등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항시 중요하다.

한편 미국은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2016(H.R.757, P.L.114-122))을 2016년 2월 18일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만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정된 최초의 미국 법령이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북한이 연관된 자금 세탁,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운송, 부정부패 행위를 한 자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 권력층과 간부들의 통치자금 조성 및 사치품 수입에 의도치 않게라도 연관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 금융망을 이용하다가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2년 4월 25일 미 재무부가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국제화물운송 및 물류기업인 Toll Holdings에 약 61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Toll Holdings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958건의 미국 대북제재와 대이란 제재, 대시리아 제재 등 다수의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 이는 Toll Holdings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Toll Holdings와 그 계열사 및 공급자들은 그동안 북한,

36) 박효민, “미국의 對 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52호, 2022 참조.

이란, 시리아와 같은 제재대상자와 해상, 항공 및 철도 운송 등에 결과적으로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달러 거래 처리를 통해 미국 환거래은행과 같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실시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달러를 사용한 국제거래 대금 지급에 대해 미 재무부는 Toll Holdings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무리 외국기업 간의 해외에서의 거래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미국 대북제재 대상자가 관여하고 대금 지급이 미 달러로 이루어진 경우에 미 달러의 송금과 지급 등의 과정에서 미국 환거래은행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미 달러 금융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미국의 모든 금융제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미 재무부의 입장이므로 우리 기업도 거래 대금 지급 및 수령 등 처리 과정에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안에서 미 재무부는 Toll Holdings의 벌금액은 해당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non-egregious),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점, 사내에 제재 준수 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한 점, 제재에 대해 직원 교육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된 금액이었다. 만일 이와 같은 감경 요소가 없었다면 Toll Holdings에 대한 벌금액은 부과 금액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 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변기에도 대중국 무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금융거래, 사이버 상에서의 거래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략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 유사시 항변 근거의 마련과 사전에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법적분쟁 소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무역 관계자들이 수출물품이 제재 등과 관련된 민감한 물품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전문판정과 자가판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판정이란 수출하려는 물품이나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서 판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신청→판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심사→전문가 검토→판정 심의회→최종판정 순으로 진행된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선택→온라인 자가판정 교육영상 시청→관련 키워드 검색 및 문답지 응답 선택→최종 판정 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자들은 조금이라도 대북제재 및 전략물자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경우 반드시 상기 과정을 거쳐 예기치 않은 피해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가능성은 낮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반도체나 양자 기술 등이 대북제재 금지 직접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북한과 관련국이 이를 국가안

보 예외 사항으로 주장하며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사이의 회색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점까지도 다각도로 예상하며 정부 당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3차례의 조치들을 거치며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었다. 2008년 8월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지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을 전면 철수시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까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집중관리 대상 품목의 확대 및 위치리스트를 발표하는 반출입 통제, 북한 소유 선박 및 북한 기항 외국선박의 입항금지를 포함한 해운통제, 제재대상 북한 개인·단체를 지정하는 금융통제, 금융제재 대상 제3국인 입국금지 등 출입통제를 실시했다.³⁷⁾

국제관계 보편성의 관점에서 한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때로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조치를 다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특수성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를 합목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도 많이 논의되었다. 특히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말살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 및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제재결의안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modify), 중지(suspend), 해제(lift)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재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하여 제재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의견이다. 제재결의안에도 인도주의 목적이나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제재 면제(exemption)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들을 하고 있는 바, 이 취지를 살려 북한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재의 합목적성을 살리자는 논리도 전개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재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하자는 견해이다.

향후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제재의 유용성과 효과, 운영방향을 놓고 국제관계 보편성의 입장에서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과 남북관계 특수성의 입장에서 제재의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항시 논쟁을 불러올 소지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37) 고재길, 전제논문, 36면.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정에서 교역을 재개하고 있는 북한과 연루되어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준수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 우리 기업과 정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만 각기 중국을 제1 교역 대상국으로 하는 남북한 인지라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다양하게 우리 기업의 중간재나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시장을 매개로 해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품목이 북한으로 이전되거나 이전되는 불법 환적 상태에서 적발되어 대북제재에 연루된다면 그 타격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이고 범산업계적인 차원에서 제재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해를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 국회 미래연구원,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연구보고서 23-08, 2023.12.
김계환 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2.
전략물자관리원,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서울:전략물자관리원. 2018.

2. 논문

- 고재길, “대북 경제제재 하의 교역물품 반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1호, 2021.
허재철 외,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문예찬,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유엔과 EU,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4권 3호, 2023,
민태은 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통일연구원. 2022.
박효민, “미국의 對 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52호, 2022
반길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경제안보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전략연구, 통권 제87호, 2022.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의 맥락에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이석기, “남북한 경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백통일경제연구, 제4호, 2023.
이승주,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3호, 2021.
이재민, ‘경제안보’의 법적 의미와 외연, 국제법학회논총, 제68권 제4호, 2023,
이효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0, 2018, 1.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 2023.

3. 기타자료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리”, 월간 「통상」, 2022.6.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 상대국별 수출비율, www.index.go.kr
[전문] 이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중앙일보』, 2019년 3월1일.
KOTRA, 2022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TRA 자료 23-052, 2023.7.

[외국문헌]

1. 논문

- Andrzej Lubbe, “National Economic Security”,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1997.

Aneela Shahzad, “Goeconomics: The New Geopolitics”, Policy Perspectives. Vol. 19, No. 2, 2022.
Edward N. Luttwak,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The National Interest, No. 20, 1990.
Russell Dean Covey, “Adventures in the Zone of Twilight: Separation of Powers and National Economic Security in the Mexican Bailout”, The Yale Law Journal, Vol. 105, No. 5, 1996.
Vincent Cable, “What if International Economic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1995.

2. 기타자료

CAADS, “LUX & LOADED-Exposing North Korea’s Strategic Procurement Networks” 16 JUL 2019.
Geoff William, “What is a Global Supply Chain”, Business Class, May 19, 2023.
Korea Joongang Daily, “Dior can’t confirm authenticity of handbag of Kim Jong-un’s sister”, 21 MAR 2024.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UNS/2019/171, 12 MAR 2019.
The White House, “G7 Leaders’ Statement on Economic Resilience and Economic Security”, May 20, 202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Voice of America, “Mercedes-Benz Investigates How Its Cars Surface in North Korea Despite Ban”, 5 JAN 2024.

투고일자 : 2024. 03. 17

수정일자 : 2024. 03. 30

게재일자 : 2024. 03. 31

<국문초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정 대 진 · 조 건 식

북한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북한에게도 중대한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서 예외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역량이 미미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심할 뿐이지, 북한도 무역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에 있다. 또한 대북제재로 금지된 사치품 수입이 해외시장 세탁 등으로 이루어져 이에 연루될 경우 의도치 않은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패와 연관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도 심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거래할 시에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19.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1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 대해 96.7%에 달하는 무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시장을 매개로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품목 최종 도착지 문제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액수는 미미하지만 중국 외에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홍콩 등 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북한과 관계되어 불미스러운 2차 제재 연루 등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항시 중요하다.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이고 범산업계적인 차원에서 제재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해를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 공급망, 동북아 공급망, 경제안보, 대북제재

